2025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현장평가 **과 업 지 시 서**

2025. 4.



용 역 명	2025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현장평가				
발주기관	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				
사업부서	문화예술교육팀				
책임자	팀장	안수희	Tel. 042-480-1050		
담당자	대리	고경선	Tel. 042-480-1053 Fax. 042-480-1099		

I 과업 개요

- 1. 과 업 명: 2025년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현장평가
- 2. 과업목적
- 2025년도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확류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
- O 전문가·시민 현장평가를 통한 운영단체 운영 역량 강화 및 사업 완성도 제고
- **3. 과업수행기간**: 계약일 ~ 2025. 12. 19.(금)
- **4. 소요예산**: 一金육천백만원정(₩61,000,000 / 부가세 포함)

Ⅱ 과업 범위

- 1. 공간적 범위
 - O 대전지역 내 일원
- 2. 시간적 범위: 계약일 ~ 2025. 12. 19.(금)
- 3. 대상적 범위
 - O 대상사업: 5개 사업(총 45개 단체 및 4개 시설)
 - 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지원 32개 단체
 -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6개 단체
 -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4개 단체
 - 기관연계형 문화예술교육 3개 단체(*가족동행 2개 단체)
 - * 가족동행의 경우 프로그램 특수성에 따라 재단과 추후 협의 후 진행
 -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4개 시설
 - O 평가규모(안)

구 분	평가횟수	용역 내용
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	64회	· 단체별 전문가 2인 각 1회 현장 방문(평가 및 모니터링) · 설문 조사결과 및 현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
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	12회	
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	8회	
기관연계형 문화예술교육	6회	
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	8회	
합 계	98회	

4. 내용적 범위

- O 2025년도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·운영
- O 전문가 현장평가 지표 개발 및 보완
- O 교육 수혜자, 사업 수행 단체 만족도 설문지 설계
- O 각 지원사업별 전문가 현장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진행
- O 참여단체(시설)의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환류체계에 맞춘 점수 산정
- O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성과, 개선점 및 발전방향 도출
- O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, 워크숍(간담회) 등 추진
- O 수시 진행현황 보고
- O 결과보고서 제출

5. 과업 세부내용

□ 전문가 현장 평가

- O 대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평가기준 마련
- O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(사업) 전문가 최소 5명이상 구성
- O 구성방법: 재단 지원사업 심의위원 인력풀 활용 및 용역 선정기관 추천
 - ※ 협상업체는 협상과정에서 전문가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시하고, 추후 재단과 최종 협의하여 결정
- O 평가위원 자격 및 구성 비율

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	구성 비율	
사식기군	지역	외부
-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자 - 관련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-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	70%	30%

- * 전문가 구성비율의 경우 추후 재단과 협의 후 조정 가능
- O 평가위원 사전 교육 진행
  - 평가방법·유의사항 안내 및 평가지표 공유 등 평가위원 사전 교육 진행
- 평가방법: 현장방문

#### □ 전문가 현장평가 지표 개발 및 보완

- O 사업별 평가 항목 도출 및 세부 평가 기준 설계
- O 사업 특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 지표 고도화

#### □ 교육수혜자, 사업 운영단체(기관) 만족도 조사

- O 대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교육수혜자, 사업 운영단체(기관) 대상 만족도 설문지 개발
- 교육수혜자, 프로그램 운영단체 만족도 만족도 조사 진행
  -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 가능

## □ 수시 진행현황 보고

- 월별 진행상황 익월 10일까지 지정서식(엑셀)으로 이메일 제출
  - → 전월까지의 추진상황(지원사업별 모니터링 현황, 전문가별 모니터링 평가점수 및 평가현황 등)
  - → 전월까지의 추진상황

# □ 워크숍(간담회) 및 보고회

- O 워크숍
  -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후 평가지표 개발에 따른 사업 수행단체 대상 워크숍
  - 성과공유 통합 워크숍
- O 보고회(각 1회)
  - 1) 착수보고회
    -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, 추진일정표, 참여연구원 명단 등
    -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
    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
  - 2) 중간보고회
    - 프레젠테이션 보고 및 중간보고서 제출
    - 2025. 9월 둘째주 이내 진행
  - 3) 결과보고회
    - 프레젠테이션 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
    - 2025. 12월 셋째주 이내 진행
    - ※ 중간·결과보고서에는 현장평가 진행 상황 및 각 만족도 조사 내용이 첨부되어야 함

#### □ 결과분석

- 전문가 평가의견서와 교육사업 수혜자, 교육 운영단체 만족도 조사 결과 취합
- O 전문가 평가 점수 산출을 통한 결과분석 및 점수 산출
- O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사업의 개선점 도출과 발전방향 제언

#### □ 결과보고서 제출

-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(성과품 납품) / 10부
  - 의견수렴 등 결과분석이 도출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/ PDF 파일 및 인쇄본
  - 미비한 사항이 발생되어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수정·보완 하여야 함
  - 최종보고서 제출 시 경비부분은 정산서 별도 제출
- O 과업수행 관련 원본자료(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포함) 및 결과보고서가 수록된 USB 기록물 3개
- 조사 및 분석자료 (USB 1개 및 별도 메일 발송)
- 전문가별 모니터링 평가자료 포함

# Ⅲ 과업 수행 지침

### 1. 일반 사항

- 본 과업지시서는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환류시켜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- O 제반 규정이나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,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, 대전문화재단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.
-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서 및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, 과업추진 일정계획,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.
- O 모든 과업은 이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우선으로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과업수행책임자, 연구원, 전담인력 등 참여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, 동 전담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
- O 대전문화재단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
- O 설문조사, 보고회, 워크숍, 각종 자료 수집 등 업무수행상 소요 되는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
-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 되었거나 새로운 과업이 필요 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
- O 재단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 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회의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
- O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준함
- O 본 과업의 성과품 등 최종 산출물의 저작권은 재단에 귀속됨
- O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재단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, 이 경우 용역비 감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함
- 평가와 관련하여 재단의 별도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
- O 조사 및 평가, 보고회, 설명회, 각종 자료 수집 등 업무 수행상 소요 되는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

### 2. 평가 세부조건

- 지원사업 평가 및 결과분석 시 정확한 통계자료 및 문헌 활용, 현장조사 등을 통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의 인용과 출처,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함
- O 전문가 평가위원의 구성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함
- O 사업별 지표, 평가위원 구성 등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

#### 3. 과업종료

- O 과업수행의 종료는 계약기간 종료일이 아닌 최종 결과보고서가 납품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함
-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 결과에 오류가 발견될 시는 과업수행자는 그 부분을 재실시하여 수정·보완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, 재단의 승인을 받아 납품한 성과품이라 할지 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함

#### 4. 보안대책

- O 계약체결 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재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고, 외부 유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재단에 경영상 피해를 입힌 경우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져야 함
- O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과 정보,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,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
- O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의 승인을 얻은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

#### 5. 기타사항

-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종료일 이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,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
- O 과업수행 중 사전에 재단의 사정으로 주요계획이 변경될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,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함
- O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름

- O 과업수행자는 재단 및 제3자에게 과업수행과정 또는 과업 결과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,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함
-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, 저작권 등 사용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집

### 6. 대금지급

- 대금지급은 용역 실시 후 성과품 및 최종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후 용역 업체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되 수정·보완 등에 소요되는 사업경비는 지급하지 않음
- 본 과업에 따른 계약금 지급은 성과품 및 최종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자의 청구(전자세금계산서 발행)와 납품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등 제출에 의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(토요일, 공휴일 제외)에 지급
- O 과업수행에 필요한 선금의 지급 요청 시 계약금의 50%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며,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음
  - 선금: 계약체결 후 계약금의 50%
  - 잔금: 정산 및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의 50%

끝.